#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022.6.13. 개정)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22.6.13. 개정)

1. 수료생 중 본교 대학원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2022.6.13. 개정)
3.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2022.6.13. 추가)

## 제 2 장 책임과 의무

제3조(대학의 의무)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연구개발과제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본교의 「연구실환경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022.6.13. 개정)(2023.09.25 개정)
6. 학생인건비 유용(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2022.6.13. 자구추가)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2.6.13. 자구수정)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2023.09.25 자구수정)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2023.09.25 호 신설)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2022.6.13. 개정)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본교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2022.6.13. 자구추가)(2023.9.25. 개정)

제6조(연구실 운영)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2.6.13. 자구수정)(2023.9.25. 자구수정)

## 제 3 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2022.6.13. 개정)(2023.9.25. 개정)

제8조(연구참여확약서 작성) ①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를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022.6.13. 자구추가) (2023.09.25 개정)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②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2022.6.13. 개정)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의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의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의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022.6.13. 개정) (2023.09.25 호 신설)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0조(학업·연구권리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2.6.13. 개정)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 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2조(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2022.6.13. 자구수정)(2023.4.3. 개정)

1. 학사과정: 월 130만원
2. 석사과정: 월 220만원
3. 박사과정: 월 300만원
4. 학・석사연계과정: 월 130만원(2023.09.25 호 신설)

② 삭제<2023.09.25.>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본교는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022.6.13. 항 추가)

② 삭제<2023.09.25.>

제14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022.6.13. 개정)

②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학생인건비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관리) ① 본교 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점검) 본교는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3.9.25. 자구수정)

## 제 5 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8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대학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023.09.25 자구수정)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2023.09.25 자구수정)

제20조(안전 보장)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의 「연구실환경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2023.09.25 자구수정)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교와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023.09.25 자구수정)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2022.6.13. 자구수정)

제23조(고충·상담 창구운영)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2022.6.13. 개정)

제24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교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2022.6.13. 신설)

②학생연구자는 ①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기획과, 교무과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2022.6.13. 자구추가)

② 본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 조정,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2022.6.13.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